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19가단52011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회덕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준태, 문윤식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2015. 8. 17.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을 1,2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1,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5. 4. 27.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E 구축사업에 대하여 계약금액 16,289,000,000원으로 하여 사업실시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15. 6. 16.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6,921,9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사업 중 네트워크 장비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6.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총금액 3,299,6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네트워크 장비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다. F은 2015. 7.경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G가 이 사건 공사 관련 네트워크 장비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한다). F은 2015. 7. 31.경 이 사건 제2 계약에 기하여 G에 대금 2,217,71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G는 2015. 7.경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견적서, 발주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H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네트워크 장비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계약'이라고 한다). G는 2015. 12. 17.경 이 사건 제3 계약에 기하여 H에 대금 39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H은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견적서, 발주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 네트워크 장비 등을 설치한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계약'이라고 한다). H은 2015. 12. 21.경 이 사건 제4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대금 38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5. 8. 17.경 C와 사이에 'C가 이 사건 공사 관련 네트워크 장비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5. 12. 28.경 이 사건 제5 계약에 기하여 C에 대금 36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7.경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계약에 기한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9857호). 위 법원은 2019. 10. 23. ‘C는 원고에게 644,59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I은 2017. 12. 29.경 ‘C의 대표이사로서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원고 이외의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6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398).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2. 14. I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노735).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 갑 14 내지 16호증의 각 1, 2, 갑 19, 20, 22호증, 을 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원고는 이 사건 제1 계약에 기하여 C에 2,068,000,000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 2) I은 F의 회장 지위에 있으면서 자금세탁의 의도를 가지고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제2 내지 5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허위의 이 사건 제2 내지 5 계약을 통해 C는 실제로는 F로부터 받아야 할 381,700,000원을 F으로 하여금 G 및 H을 거쳐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정작 피고로부터는 369,600,000원만을 받은 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12,100,000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동액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C는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 3) C가 2015. 8. 17. 무자력 상태에서 통모하여 허위의 이 사건 제5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
- 4)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제5 계약은 허위의 채무부담액인 12,100,000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원고는 늦어도 10이 기소된 2017. 12. 29. 무렵에는 C가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제5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9857호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원고가 C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은 2,068,000,000원에 미치지 않는다.
- 3) 이 사건 제5 계약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C나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하여

-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 2) 10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7. 12. 29.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과 갑 17, 18, 21, 22, 24, 25호증의 각 기재로 원고가 위 기소 당시 이 사건 제5 계약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제척기각 도과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해당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에 대하여

1) C가 2015. 8. 17.경 통모하여 허위의 이 사건 제5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및 갑 5, 6, 12, 17, 18, 21, 22, 24, 25호증의 각 기재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제5 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및 갑 5, 6, 12, 17, 18, 21, 22, 24, 25호증의 각 기재로 채무자에 해당하는 C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 측 그들의 대표자가 이 사건 제5 계약 체결 당시 이로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어렵다.

3)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